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1가단53354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재단법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주원

담당변호사 민관식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6. 14.

판 결 선 고 2022. 7. 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은 28,278,579원 및 그 중 27,553,477원에 대하여 2021. 11. 12.부터 2022. 4. 1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.항의 28,278,579원 및 그 중 27,553,477원에 대하여 2021. 11. 12.부터 2022. 3. 31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사이에 2021. 9. 3.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특허청 2021. 9. 3. 접수 E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)의 보증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F은행(이하 '소외 은행')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의 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하였다.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) 소외 은행은 2012. 9. 21. 피고 회사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이를 담보로 30,000,000원을 변제기 2013. 9. 17.로 약정하여 대출해 주었다. 그 후 그 보증기한은 2021. 9. 10.로, 보증금액은 27,000,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.

3)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,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

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,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,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, ③ 미납한 보증료, 지연보증료, 위약금, ④ 대위변제수수료, ⑤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, ⑥ 채권의 집행보전(해지 포함),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, ⑦ (원고가 정한 물에 의한)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.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9. 4. 1. 이후부터는 연 8%이다.

4) 피고 회사는 2021. 7. 23.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원고는 같은 해 8. 23.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행사 등의 법적조치를 예고하였다. 원고는 2021. 11. 12. 소외 은행에 27,553,477원(= 원금 27,000,000원 + 이자 553,477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

5)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시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(연 0.3%)에 연 0.5%를 가산한 연 0.8%를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.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위약금은 27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9. 11.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1. 11. 11.까지 연 0.8%의 비율로 계산한 36,690원(십원 미만 버림)이다.

6)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, 2021. 9. 16.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101515호로 특허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신청비용으로 688,412원을 지출하였다.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비용도 원고에게 상환하게 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,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,278,579원(= 대위변제금 27,553,477원 + 미수위약금 36,690원 + 집행보전비용 688,412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,553,4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11. 12.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장 송달일인 2022. 4. 15.까지, 피고 C는 소장 송달일인 2022. 3. 31.까지 각 연 8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청구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, 피고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. 9. 3. 사해행위를 하였는데, 그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,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7905 판결,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)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, 피고 D의 악의

갑 제12호증(신용정보공동망조회서)의 기재에 의하면, 2021. 9. 3.에 가까운 같은 해 7. 19.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은 ① 이 사건 대출원금 27,000,000원(위 일자 기준 원리금은 27,217,000원), ②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금 153,000,000원, ③ F은행에 대한 별도의 채무원리금 132,000,000원,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원리금 164,000,000원 등 744,000,000원에 이르는 반면,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은 찾아볼 수 없고,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 그 전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피고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 또한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일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 갑 제13 내지 15호증(각 특허등록원부)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21. 9. 3.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위와 같은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위 양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 일반이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.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.

3) 사해행위취소

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에 2021. 9. 3. 체결된 각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.

나. 원상회복청구

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피고 D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1. 9. 3. 접수 E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받아들여기로 하고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,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해근

별지